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03호, 2022.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살처분·이동제한·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류인플루엔자"란 조류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가축전염병을 말하며, 조류인플루엔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고병원성·저병원성으로 구분한다.
2. "환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란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하며, "의심축"이란 축주 또는 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어 신고한 가축으로 가축방역관이 확인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

3. "발생농장"이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란 발생농장이 소재하는 마을을 말한다.
4. "관리지역"이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 9)를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및 시·군관계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5. "보호지역"이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를 초과하여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및 시·군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6. "예찰지역"이란 보호지역으로부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를 초과하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예찰지역의 범위를 시·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및 시·군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7. "방역지역"이란 관리지역·보호지역·예찰지역·발생권역을 말한다.

8. "발생일"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9. "감수성동물"이란 닭·오리·칠면조·메추리·거위·타조·꿩·기러기·돼지·개·고양이 등의 가축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및 그 밖의 동물을 말한다.
10. "권역"이란 평상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전국을 몇 개의 광역단위로 지역화한 것을 말한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권역을 "발생권역"이라 한다.
11. "운송"이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가축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가축의 상차, 운전, 휴식 및 하차 등 출발에서 도착까지 작업 과정을 말한다.
12. "가축운송자등"이란 가축운송에 관련된 축주, 동물취급자, 동물운송자 및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13. "방역강화관리대상"이란 살아있는 닭과 오리 판매소, 가든형식당, 가축거래상인 및 상기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가금농장(임시사육하는 계류장 포함)과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를 말한다.
14. "방역관리 책임자"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10만 마리 이상의 닭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 선임되어 가축방역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역 전문가 또는 업체를 말한다.
15. "이동제한"이란 전염병의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염되었거나 역학적으로 관련되어진 시설·물건·차량·사람 등에 정해진 기간동안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16. "역학조사"란 전염병의 원인과 전파와 관련된 요인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를 말한다.

17. "거점소독시설"이란 축산관련차량(운전자)의 방역지역별 이동시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긴급 백신접종"이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 또는 역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의 가금류 가축에 접종하는 것을 말한다.

19. "백신주"란 백신제조용 바이러스로, 실험동물에 접종실험을 거쳐서 질병에 방어할 수 있는지 능력평가를 마친 바이러스를 말한다.

20. "항원뱅크"란 백신 완제품을 만들기 전 단계로, 백신주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냉동 비축해 놓은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에 따른 방역조치 등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돼지는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돼지는 관리지역 내 농장 포함)에서 사육하고 있을 경우 적용된다.

1. 닭·오리·칠면조·메추리·거위·타조·꿩·기러기·돼지·개·고양이 등 가축
2.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3. 감수성동물중 현장방역관이 임상증상 등 의심소견을 관찰한 동물
4.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동물(이하 "적용대상 동물"이라 한다)의 생산물
5. 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시설·물건·차량·사람

제2장 예방활동

제4조(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축산관련단체·축산농가 등의 역할분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집합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추진) ① 검역본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물품별 위험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정밀검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조류인플루엔자 예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예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말까지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다음 년도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닭과 오리 판매소·가든형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이하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제2조에 따른 방역강화관리대상(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및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계획에

따라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분리 등을 실시하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항원, 항체) 결과 양성인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하여는 의사환축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하고,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축방역기관 중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시·도가축방역기관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H형까지 판정 후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항원, 항체)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제4항에 따른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를 위하여 제2조에 따른 방역강화관리대상(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 및 예찰 등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시·도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검역본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제7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 닭·오리 등의 가축관련 축산단체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축산업 허가 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점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이 오리, 산란계 또는 종계의 노계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와 가축거래상인이 가금을 운송·거래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 시 파는 사람은 이동승인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국내 사육 가금 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등 긴급한 때에는 이동승인서 적용 대상 가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역강화관리대상은 별지 제8호서식, 제8호의2서식 및 제8호의3서식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방역강화관리대상은 제5항에 따른 거래기록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조제4항 및 제1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금류에 대하여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하여 축사별로 폐사 및 산란(산란하는 가금에 한한다) 현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사율 및 산란율 기록 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

사별로 사육 중인 가금의 수와 대비하여 당일 폐사한 가금의 수가 최근 7일 간의 평균 폐사 수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최근 7일 간의 평균 산란율 보다 3 퍼센트 이상 저하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⑧ 법 제5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의5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는 선임된 농장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위한 소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분뇨 수집 등 시료채취 업무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이행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백신 수급·비축 등) ① 검역본부장은 긴급 백신접종에 대비하여 최근 국내 및 주변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형(혈청형)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백신제조용 항원을 비축·보관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축 항원으로 백신을 제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항원뱅크 구축상황을 점검하여 긴급백신 접종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긴급백신 완제품을 긴급하게 수입할 수 있는 수입경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9조(백신주 등 선정) ① 검역본부장은 긴급백신 접종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백신주 및 비축물량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과적인 백신주 사용을 위해 제1항의 보고를 토대로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등을 통해 비축물량 조정 및 백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장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0조(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등) ① 의심축을 발견한 소유자

등, 수의사,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법 11조 규정에 따라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읍장·면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구청장·읍장·면장은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 의심축을 발견한 자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신고한 경우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 동일한 신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지체없이 소속 가축방역관을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임상진단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임상검사 등의 결과 의사환축으로 판단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보고하여 검역본부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는 소독조·소독장비의 설치. 이 경우 통제초소의 설치장소는 적용대상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인접축사·발생농장 출입구·도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축사내외·차량·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3.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의 이동 금지
4.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사환축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의사환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하여 외출을 자제토록 조치하고, 방역복 등 보호장구를 지급
5. 의사환축과 관련된 물품의 농장 밖으로의 반출 금지
6. 검사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시료 포장지·포장상자 외부를 철저히 소

독하여 정밀검사 의뢰

7.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역본부 및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농장내 상주

④ 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조류인플루엔자에 적용대상 동물의 축사가 인접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발생지에 대하여 가축의 이동금지 조치와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가축방역관은 제3호의 조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도지사의 조치)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검역본부장 및 타 시·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통보
2. 검역본부장에게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현지파견 협조요청
3.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 대책본부 설치
4.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발생농장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의 이동사항·출입자·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역 지원 지시
5. 시·도경찰청의 방역통제 인력 지원체계 확인
6.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독 등 방역조치 지시 및 현장통제본부·이동제한 지역의 주요 길목에 이동통제초소 설치 준비 지시
7. 발생지 및 방역지역내 적용대상 동물의 농가별 사육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제12조(시장·군수의 조치)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제10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사람·차량의 출입제한 조치

2. 발생지 및 방역지역 설정에 대비하여 의사환축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적용대상 동물의 사육현황 조사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3. 의사환축의 환축판정을 대비하여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해당 시·군에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
4.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 현장방역조치를 위한 인력·장비·약품 등의 조달계획 수립
5.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 계획 수립
6.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사람·차량·가축등의 이동제한 및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와 기초적인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 등을 위해 시·도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초동방역팀을 지체 없이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파견하고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시·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임상관찰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파견
2. 현장파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별표 3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고 출장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내역서를 작성하여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3.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을 포함한 다양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에 제공
4. 발생지의 소독,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 등의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상주

5. 의사환축의 환축판정을 대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제14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와 검역본부장의 관계관 현지
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의 발생상황·발생지의 축산업 형태·지형적 여건·야생조류 서
식실태·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살처분·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긴급방역조치에 관하여 가
축방역심의회에 부의
2.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의 설치
3. 국방부·경찰청 및 질병관리청 등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의 통지와 환축
판정시를 대비한 방역인력 지원체계 점검 및 인체감염 방지조치 협조
체계 점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시·도 이외의 타
시·도의 시·도지사에게 관할지역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임상관찰 등
예찰을 지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시·도지사
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검역본부장의 조치) 검역본부장은 의사환축 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도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환축 발생시 시·도
역학조사반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
2.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유관기관(질병관리본부 등) 등에 보고 및 통보
3.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의 설치
4. 시장·군수,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제16조(병성감정 등) ① 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

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축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 또는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기간 중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일상적인 병성감정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수행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시설·검사장비·검사 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7조(발생사실의 공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5조제2호에 따른 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언론매체를 통해 발생사실, 발생장소, 발생경위, 방역조치 개요 등을 알려야 하며,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질병관리청·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발생지 현장통제본부에 중앙통제관 및 민간전문가를 파견하여 이 요령에 의한 방역지도 및 방역기관·단체간의 업무조정을 하게 하거나 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을 발생지에 파견하여 방역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축산농가, 축산관련 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추진상황·정부 방역대책·농가의 방역수칙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제3의 홍보실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요령, 축산물의 안전성, 소독약품의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현장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시장·군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3의 홍보실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방역추진 상황 등 홍보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검역본부장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에 따라 환축 발생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이동제한 등의 조치) ①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방역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방역지역의 적용대상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의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적을 적용한 지도를 사용한다.

② 발생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 방역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및 군부대의 장에게 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4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
2. 발생지 및 방역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적용대상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른 명령서 개별통보 및 공고
3. 발생지 및 방역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람·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출입통제·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
4. 발생농장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에

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

5. 발생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출을 자제토록 하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외출을 허용

6.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 차량, 적용대상 동물과 그 생산물 및 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조치는 제20조에 따른다.

④ 시장·군수는 방역지역안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보호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

2. 예찰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관리지역·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⑤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발생농장 및 관리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방역관련 공무원을 배치하고, 보호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는 방역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살처분 완료시까지 일일 임상관찰, 오염물건 소독,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게 한다.

제19조(살처분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살처분 및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관계관, 시·군 관계관 등과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 관계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

다.

1.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돼지·개·고양이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및 그 생산물
 2.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개·고양이 제외, 관리지역 내 돼지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및 그 생산물로서 별표 10의 절차에 따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정한 것. 다만,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살처분 제외 대상으로 방역분류기준을 부여받은 농장 중 살처분의 제외가 결정된 농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
 4. 그 밖에 발생농장과 근접거리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진입로 사용, 동일한 분변처리장 이용 등 역학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의심되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살처분 제외가 결정된 농장의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과 사람·장비·차량·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어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살처분 및 폐기 명령 대상에 포함한다)
- ②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 결정시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관계관,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 폐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축소 또는 확대하여 실시하거나 제외시키기로 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실사단을 파견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고 현지 실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

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긴급한 때에는 현지 실사단 파견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가축의 살처분·매몰 또는 소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살처분 관련규정·작업요령·주의사항·인체감염예방요령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구 착용 및 필요한 약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이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으로 환축과 접촉우려가 있는 방역조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1. 만 20세 미만, 만 65세 이상
2. 임신부
3.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미소지자, 신원확인 및 연락처 확인 불가능자(외국인)
4. 38℃ 이상의 고열 등 감기증상이 있는 자
5. 폐질환, 심장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증 및 혈색소병증(hemoglobinopathy) 환자로 진단받은 자

⑤ 발생농장의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의 처리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발생지 또는 발생지 인접지역에서 매몰 또는 소각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살처분 대상가축을 매몰·소각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반차량은 운반 전·후에 차량의 내·외부를 적정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을 마친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적용대상 동물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 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및 매몰작업을 위하여 발생지역의 다른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⑦ 시장·군수는 가축의 소유자·관리자, 가축방역,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역학조사 및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역학조사) ① 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며, 긴급한 경우 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차 역학조사반은 농가 내부 및 차량 등의 다양한 오염원 시료를 확보하여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분석 및 살처분 보상비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차 역학조사내용을 검역본부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동상황 등 조사 및 시료채취를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전까지 해당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
2.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 등이 접촉한 적용대상 동물
3.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사람·차량과 그 사람·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적용대상 동물
4.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에 반출·입된 가축의 분뇨 및 이를 운반한 차량
5. 살처분 대상가축, 관리지역·보호지역·예찰지역 오리 및 역학 관련 적용대상 동물에 대하여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감염 추정시기 또는 임상증상 발현일이 의사환측 발생일보다 이전으로 추정되거나 확인되었을 경우 추정일로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7. 발생상황 등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 목적으로 환측의 임상증상 등에 대한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

8.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발생농장 내·외부 및 차량, 장비·도구 등 다양한 오염원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3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소독 등 조치) ① 시장·군수, 발생농장·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적정한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

1.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초소

2. 환측 또는 의사환측과 접촉되었거나 접촉되었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류 등(이 경우 소독약을 이용한 소독을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3. 발생농장의 축사·관리사·창고·숙소·분뇨처리시설·하수구, 발생지 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

4. 살처분, 소각 또는 매몰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장비

5.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

② 시장·군수, 발생농장·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발생지의 설치류·야생조류 등 조류인플루엔자 매개체에 대하여 구제·접근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알·깃털 등) : 소각 또는 매몰
2. 가축의 분뇨 : 농장내 매몰하되, 살처분 시 분뇨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보관한 다음 28일 경과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매몰 또는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장의 경우 위험도 평가, 청소·소독 상황, 부숙 정도 등을 평가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3. 배합사료·조사료·깎짚·왕겨 등 : 소각 또는 매몰(단, 지대사료 등 포장되어 소독조치가 가능한 경우 제외)
4. 차량·축산기자재·장비 등 : 세척 및 소독
5. 가축의 치료에 사용한 약품류 : 소각 또는 매몰

④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야생조류에서 검출을 포함한다)하여 모든 방역지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법 제17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법 제17조의3 각 호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소독필증을 발급받고, 시설출입차량 운전자는 축산 관련 시설 또는 가금농장 방문 시 이를 축산 관련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 소유자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경우 거점소독시설 관리자, 시설출입차량 운전자 및 축산 관련 시설 소유자는 소독필증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22조(관리지역·보호지역의 방역) ① 시장·군수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관계관 및 시·군 관계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장은 방역지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의 적용대상 동물의 소유자에게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내에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관리지역·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 및 보호지역 밖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보호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 다만,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가금과 돼지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되, 육계의 경우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출하 도축장이 소재한 인접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독·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인접 시·도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속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2. 닭·오리 부화장의 폐쇄 및 보관중인 닭·오리의 부화란 폐기. 다만, 보호지역 내 닭 부화장의 경우 위험도평가 후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종란의 입고,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할 수 있으며, 보호지역 내 오리 부화장(종오리 농장과 인접한 부화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방역지역 설정 이전에 예찰지역 또는 이동제한 지역 밖에서 반입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험도평가 후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종란의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

※ 위험도평가는 임상예찰, 정밀검사(종란을 공급한 농장별 시료를 구분하여 검사),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방역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반출 시 해당 시·도 밖으로는 반출하지 못함

3. 관리지역 내 오리 도축장은 폐쇄. 닭 도축장과 보호지역 내 오리 도축장은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대내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만 도축 및 그 생산물 반출 허용. 다만,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의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방역대외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도 검사실시 후 음성이

면 도축 및 그 생산물 반출 허용

4. 닭·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는 농장내 매물 또는 축사내 보관하되, 산란계의 경우 농장내 이동은 허용하고 농장 밖으로의 반출은 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보호지역 또는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이동 허용
5. 닭·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은 폐기하되, 보호지역의 닭 종란과 식용란은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닭 종란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유효한 소독제로 소독 실시 후 해당 시·도 내 반출 허용, 식용란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조건으로 가공되었거나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반출 허용
6. 사료·깎짚·왕겨는 농장 밖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에서만 운행하는 사료전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료를 농장내 반입하되,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사료의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등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사료 폐기
7. 축사 내·외부,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 실시
8. 감수성 동물·생산물·사료·동물약품·왕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외부·바닥·바퀴·운전석 등 소독후 통행허용. 다만, 닭·오리 등 감수성 가축의 분뇨 운반차량은 통행을 금지하되,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보호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 받은 닭 분뇨 운반차량은 허용
9. 사람에 대하여는 이동통제초소 및 가금류 사육농장 출입시 신발 및 손 소독후 통행허용
10. 관리지역내 사료공장의 원료·사료는 이동제한 조치하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가축방역심의회의의 협의 결과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기
11. 보호지역내 사료공장의 원료·사료는 이동제한 조치하되, 위험도 평가 후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 허용

※ 가금용 사료는 검역본부 담당관이 직접 점검 후 생산 및 유통 허용

12. 닭·오리의 분뇨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폐쇄

13. 발생지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와 발생농장의 적용대상 동물 또는 오염된 생산물을 급여하는 등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적용대상 동물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는 2주 간격으로 2회 실시하여 항원 양성인 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을 실시하고, 항체만 검출되는 경우에는 방역대 해제와 함께 이동제한 해제, 조사·연구 필요시에는 검역본부로 이송 조치

14. 난좌, 왕겨, 깔짚 등을 생산하는 업체의 원료·제품에 대하여 일시 이동제한 및 관련 시설·장비·사람 등에 대한 소독

④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제23조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을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

2.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 조치

제23조(예찰지역의 방역) ① 시장·군수는 예찰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도 가축방역심의위원회, 시·도 관계관 및 시·군 관계관과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의 소유자에게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3일 내에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예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예찰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오리는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 및 예찰지역 밖의 오리에 대해 예찰지역 안으로의 반입을 금지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다.

가. 출하 7일 전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가장 가까운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및 방역요건을 충족하고, 방역 관련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며, 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입 허용

다. 닭 등 그 밖의 가금류는 출하 7일 전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출·입 허용

2. 닭 도축장은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도축 허용, 오리 도축장은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대 내에 있는 오리에 대하여만 도축을 허용. 다만, 오리도축장의 경우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의 가금농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방역대외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도 검사실시 후 음성이면 도축 허용

3. 닭 부화장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오리 부화장은 이동제한지역 밖에서 반입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와 제5호에 따라 반출이 허용된 예찰지역에서 유래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화 및 부화병아리를 방역대 밖으로 반출 허용

4. 닭·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는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예찰지역 또는 발생 시·군 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시장·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역지역 설정 시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해 발생 시·군 내 1개 이상 공동처리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인근 공동처리장으로 이

동을 승인할 경우 이동 허용

5. 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은 원칙적으로 폐기를 하되, 오리 식용란은 오리에 대해 임상·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가공용(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반출을 허용토록 하고, 예찰지역내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종오리 농장의 경우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종오리 농장이 부화장을 같이 운영, 부화장에 타농장으로부터 종란 유입 없음, 부화장이 외부와 차단됨 등) 하는 경우 종오리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은 부화장을 이용하여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토록 하며, 닭의 종란과 식용란은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이동을 허용
 6. 사료·깔짚·왕겨는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및 농장 내 반입시 소독을 실시하고,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등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폐기
 7. 축사 내·외부,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실시
 8. 적용대상 동물·생산물·사료·동물약품·왕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외부·바닥·바퀴·운전석 등 소독후 통행허용. 다만, 닭·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 운반차량은 통행금지 하되,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시·도지사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은 공동처리장)으로 닭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은 소독 후 이동 허용
 9. 사료공장 및 닭·오리의 분뇨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
- ④ 예찰지역(관리지역·보호지역을 포함한다) 안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은 다음 각 호가 끝난 날부터 28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안의 닭 검사(임상검사, 필요시 혈청검사·항원검사)와 오리 검사(혈청검사 및 항원 검사), 사육하지 않는 빈 축사(발생농장, 예방살처분농장, 출하 후 7일이 경과한 농장)의 환경시료에 대한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사육형태, 발생상황, 교통·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

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을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
2.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 조치

제24조(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축장, 부화장,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판매시설(조류학습장, 동물원, 일반 가정 및 가축시장), 재래시장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 축사외 장소(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 안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된 때에는 그 즉시 가축의 도축을 전면 중단하거나 해당 도축장등에 대한 이동통제, 조류판매중단 등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도축장등의 가축 계류시설 안에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을 출하한 농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경우 당해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도축장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 농장(시설)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축장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도지사가 정함
2. 환축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오염이 의심되는 도축장등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척·소독
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유지 및 질병관리청장에 제공

4. 환축과 함께 계류된 도축장내의 감수성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5. 부화장에서 부화·보관중인 전체 종란 및 부화 병아리의 폐기
6. 의사환축 발견이전에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중인 해당 도체(닭·오리 의사환축 발생 7일 이내)의 폐기 및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 등의 회수·폐기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H5형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의 항원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요령에 의한 예찰지역의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사육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은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H5형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 실시하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되기 전에 이동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는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야생조수류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 간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지점으로부터 3km 안에서 추가 발생 시 : 최초 발생 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
2. 3km~10km 안에서 추가 발생 시 : 추가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3~10km에 한하여 오리 및 그 알(식용란·종란)은 점검·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역

조치를 충족한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반입과 반출을 허용할 수 있으며, 도심지에서 야생조수류 감염 확인시에는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탄력적으로 지정 및 방역조치를 취한다.

⑧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의 방역조치 적용기간은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21일로 하며,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 정밀검사(닭은 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 기타 가금은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야생조수류 및 그 주변에서 확인된 H5형 또는 H7형 항원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내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판매 시설에서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6의 도심지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 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의 장과 검역본부,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장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검역본부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은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에는 상황반·행정지원반·유통감시반·수급대책반·역학조사반·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하되, 기관별 업무역할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장 긴급백신접종

제26조(고려조건) ① 현행의 조류인플루엔자백신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증상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을 완전히 방어할 수는 없어, 방역조치와 병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백신접종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는 예찰을 통한 조기검출과 환축 또는 의사환축의 신속한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에 예방적 백신접종은 실시하지 않는다.

③ 제29조에 따른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할 경우, 동 질병의 발생 또는 유행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항체검사로는 백신접종축과 동 질병 감염축을 구분하기 어려워 청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제27조(긴급백신접종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이동제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만으로 통제가 어려워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검역본부장의 긴급백신접종 건의 등 긴급백신접종이 필요한 상황 발생시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긴급 백신접종 건의시 환축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와 비축중인 백신제조용 항원간의 유전자 상동성검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공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차단을 위한 긴급백신 결정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법을 정하여 공포한다.

1. 접종 시기
2. 접종 지역
3. 접종 대상가금
4. 기타 필요한 사항(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

제29조(긴급백신접종 실시) ① 긴급백신 접종은 가축의 소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긴급 백신접종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30조(사후관리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긴급 백신접종축과 미접종

축이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록 관리를 실시하며, 기록 관리는 도축 또는 폐사 등 해당가축이 없어질 때까지 실시한다.

제6장 종식후속대책 추진

제31조(종식 선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제32조(종식후속대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축의 정밀검사, 발생 시·군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3개월간 이동제한지역 안의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3조(가축의 재사육) ① 제19조에 따라 가축이 살처분되거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의 축사 안에 감수성 동물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생농장(예방살처분 농장중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 환경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 및 H5·H7 항체 양성판정 농장을 포함한다) :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며,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경우로서 별표 7의 입식시험실시요령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입식시험전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며 14일간의 입식시험결과에 이상이 없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입식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지역 내 예방살처분 농장 :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며, 가축방역관이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고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경우. 다만, 돼지의 경우는 발생농장의 분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방살처분 농장이 발생농장과 인접하여 있거나 발생농장을 포함하여 밀집되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및 시·군 관계관 등과 협의(필요시 검역본부 관계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를 거쳐 발생농장의 방역상황(청소·세척 및 소독 상황, 환경검사 결과, 분뇨 처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최대 21일 범위 내에서 재입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내 예방살처분 농장 :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다만, 보호지역 내 예방살처분 농장은 해당 보호지역이 제22조제4항에 따라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경우에 한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장의 소유자등은 감수성 가축을 재사육할 수 있을 때까지 임의로 축사 등 농장 내 시설을 변경하거나 왕겨, 사료, 깔짚 등을 농장에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제34조(부화장의 영업재개) 시장·군수는 제22조에 따라 폐쇄된 부화장에 대하여 보호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후 세척·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영업을 재개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혈청형 H5 또는 H7형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거나 정밀검사 결과 H5형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검출되었거나 그 밖의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높은 폐사율 등을 보이는 경우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조류인플루엔자의 분류기준(제2조제1호 관련)

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부 판정은 다음과 같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진단 규정에 따른다.
 - 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판정시험기준에 따라 분리바이러스를 6주령의 닭에 감염시켰을때 정맥내 병원성 지수가 1.2보다 높거나 4~8주령 감수성 닭 8수에 접종하여 10일내에 6수(75%) 이상 폐사할 경우
 - 나. 분리된 H5나 H7 혈청형 바이러스가 가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HA 유전자의 유전자분절부위 아미노산 염기서열이 기존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한 경우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제12조제6호 관련)

1. 초동방역팀 구성

- 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은 도별로 적정한 초동방역팀을 구성하고, 초동방역팀은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 1.2 각 초동방역팀은 1~3인으로 구성한다.

2. 초동방역팀 교육·훈련

- 2.1 초동방역팀은 분기별 1회 이상 초동방역에 필요한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반기 1회 이상 현장 실습훈련을 받는다.
- 2.2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초동방역팀 투입

- 3.1 의심축 발생 시 시·도 지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장·군수는 방역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시, 농식품부 장관은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지시할 수 있다.
- 3.2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받은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을 해당농장에 투입하고 그 세부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장·군수 등 투입요청기관에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
- 3.3 방역본부장은 AI 의심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도본부의 초동방역팀 투입만으로 곤란한 때에는 타 도본부의 초동방역팀을 투입할 수 있다.
- 3.4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투입시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휴대하도록 조치한다.
- 3.5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상시 비축하고 AI 의심축 발생 시 발생지역 도본부장으로 하여금 초동방역팀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4. 초동방역팀 임무

- 4.1 초동방역팀은 의심축 발생농장에서 가축방역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

를 지원한다.

4.1.1 AI 의심축 발생농장 입구에 의심축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표시한 별표 4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4.1.2 의심축 발생농장의 진입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 소독장비를 운영한다.

4.1.3 의심축 발생농장 진입로에 대해 소독(생석회 살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1.4 의심축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 이동을 금지한다.

4.1.5 의심축의 소유자, 소유자의 동거가족 및 의심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와 가축·사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아 개인 방역조치를 실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2 초동방역팀은 의심축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기록·관리하고, 질병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5. 초동방역팀 철수

5.1 초동방역팀은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당해 농장 입구에 상주하여야 하며, 양성판정 시에는 당해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을 종료하고 시·군 인계 후 철수한다.

5.2 초동방역팀은 철수전에 수집된 정보를 가축방역관에게 인계·인수하고 개인 방역조치 및 방역차량 등 장비소독 후 철수한다.

5.3 철수 후 목욕, 세차, 재 소독을 실시한 다음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격리조치 후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정상업무를 추진하고 양성일 경우 최소 7일간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 및 축산관련시설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단, 초동방역 및 사후관리 인력으로 투입 가능)

6. 초동방역팀 운영기자재

6.1 초동방역팀 운영기자재는 다음과 같다.

- 침구류, 취사용품, 소독 및 통제용품 등이며 세부물품은 방역본부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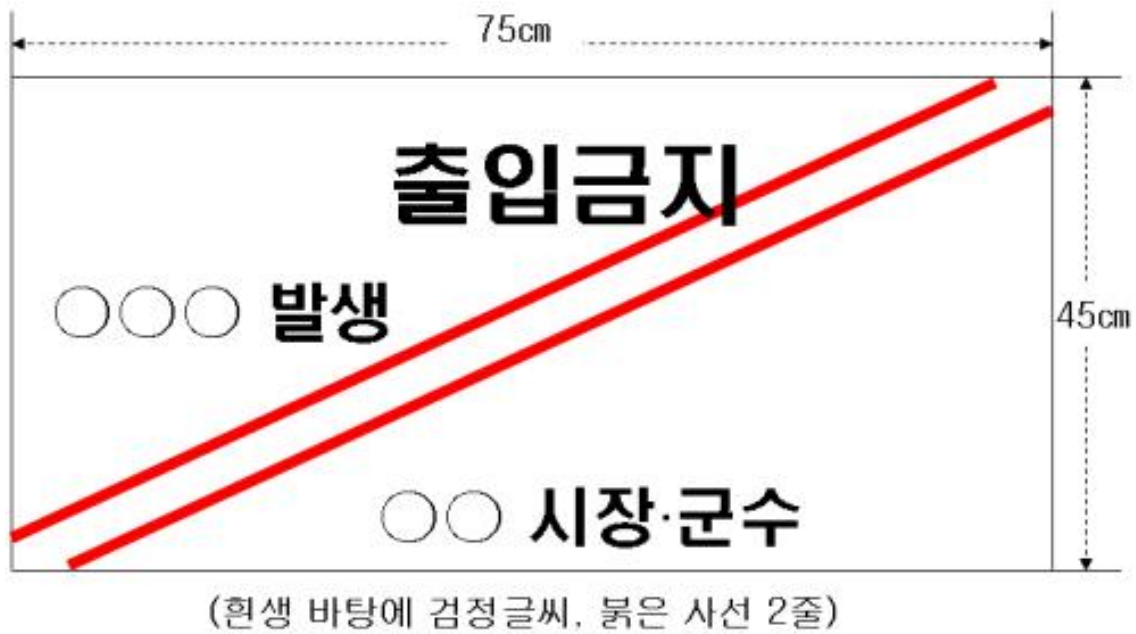
검사시료채취 준비물(제13조 관련)

집행용구	수량
프라스틱 백(90 x 90cm), 냉장용 아이스팩 포함	6개
프라스틱 백(50 x 25cm)	6개
고무장화	
고무장갑	
1회용 장갑 (라텍스 장갑)	
보호복(LEVEL D급)	
보호용 마스크(안면 전면 또는 N95)	
보호용 안경(고글)	
멸균 목재 압저 (tongue depressor)	측사별 5개
1회용 주사기 3ml	측사별 20개
멸균 면봉	측사별 40개
50 ml 코니칼 튜브(바이러스 수송배지 포함)	측사별 12개
아이스박스(혹은 스티로폼 박스)	2개 이상
네임펜	3개
[별지 제3호서식] 시료채취내역서 사본	1부
박스테이프	1개
조류인플루엔자 간이항원 진단키트	10 Test 분

* 준비물은 출장 인원, 검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표 4]

출입금지 표지판(제18조 관련)



[별표 5]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제20조제4항 관련)

1. 발생농장에 가축·종란을 공급한 농장 또는 부화장 등

가. 닭(칠면조, 메추리 등 닭목 포함, 이하 같다)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7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 중인 적용대상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증상 발견 시 정밀검사 실시

나. 오리 등 기타 가축(거위, 기러기, 청둥오리 등 오리목 포함, 이하 같다)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 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다. 닭·오리 부화장 등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병아리를 공급한 부화장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가) 부화장에서 운영하는 종오리 농장(소유주 및 그 가족 등이 동일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에 사육 중인 감수성 가축, 종란, 환경시료 등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고

나) 부화장 내 감수성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종란, 부화중인 종란(일령별 검사) 및 환경시료(차량 내·외부, 운반용 난좌, 분양 용기, 발육기·발생기, 작업용 장화 등 오염원이 잔존 가능한 시설·기구)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2)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타 농장으로 분양된 병아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가)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타농장으로 분양된 닭 병아리는 입식일부터 7일 이상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다른 일령의 닭에 대하여도 임상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

나)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타 농장으로 분양된 오리 병아리는 입식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하고, 다른 일령의 오리에 대하여도 임상검사 후 이동제한 해

제

- 3)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부화장에 종란을 공급한 농장에 대하여는 마지막 공급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 중인 감수성 가축, 종란, 환경 시료 등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2.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을 사육하거나, 종란을 부화하는 농장 또는 부화장

가. 닭 농장

-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입식일로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
- 2) 이동제한 기간 중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필요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은 지체 없이 살처분.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매몰 조치하고, 마지막 입식일로부터 14일 이상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나. 오리 농장

- 1)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내에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마지막 공급일로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하고,
- 2)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다. 닭·오리 부화장 등

-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생산된 닭·오리의 종란을 부화하는 부화장에 대하여 해당 부화장 폐쇄, 사람·차량 등 출입 통제, 부화·보관 중인 종란과 부화 병아리 폐기·살처분 및 부화장의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세척·소독. 다만, 해당 부화장에 부화·보관 중인 종란은 검역본부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해당 부화장을 합동으로 점검하여 일정한 방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종란을 폐기하지 않고,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외부 반출 및 분양 허용

* 일정 방역요건 : 발생농장의 종란을 부화·보관하고 있는 시설과 분리되어 부화·보관, 부화장(발생농장 관련 보관 중인 종란 포함)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음성, 부화장 내 차량·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부화장 내 종란 관리 인력 등에 대한 교차 오염 여부를 평가하여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전까지 해당 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분양받은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소독·임상관찰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지속적으로 방역관리를 하여야 하며,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닭의 경우 필요시 혈

청·분변검사, 오리의 경우 혈청·분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3) 해당 부화장에 대하여 종란 등의 폐기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부화장의 세척·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 입란 허용

3. 발생농장 환축과 접촉한 사람(소유자등·진료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운반차량 운전자 등)이 방문하였거나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차량이 출입한 농장 또는 부화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발생농장을 방문·출입한 이후 방문·출입한 다른 농장·부화장의 가축(알)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방문·출입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

나. 이동제한 기간 경과 후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닭은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는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4. 발생농장에서 가축 등을 출하한 도축장 등

가.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류가축 전 두수를 지체없이 살처분

나.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 또는 사람이 방문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출입 또는 방문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기간 경과 후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닭은 임상검사(필요 시 정밀검사), 오리는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다.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내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을 도축하여(동일한 날짜에 도축된 다른 농장의 도축물량 중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포함) 보관·유통중인 물량을 파악하여 소각·매몰하고 소독 조치

라.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내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이 살아있는 닭·오리 판매소 등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을 포함한 판매소 등에 계류된 가금류 전두수를 지체 없이 살처분하고 보관·유통중인 물량(다른 농장의 가금육도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포함)을 소각·매몰하고 소독 조치

마.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는 방문 당시의 의복·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사용(운행)토록 조치. 다만,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바퀴 및 운전석 발판 등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운행토록 조치

5.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알(식용란)의 수집·보관 장소 등

- 가. 발생농장에서 판매된 알(식용란) 중 계란 및 메추리알은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생산된 경우 폐기(소각·매몰, 이하 동일), 오리알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생산된 경우 폐기하고,
- 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의 시설·장비·차량 등은 발생농장의 계란(오리알 포함)이 폐기되고 집하장 내 모든 장비, 시설, 차량 등의 세척·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제한. 다만, 발생농장에서 공급된 알이 아닌 경우 소독수에 소독, 세척, 건조하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시 유통 가능

6.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의 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및 차량(예 종란운반·식용란운반·가축운반 차량, 상하차인원, 백신접종, 진료수의사, 농장종사자 등과 이용된 차량)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하고, 접촉 당시 의복·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 및 건조(차량의 경우 차량의 바퀴 및 운전석 발판 등에 대한 환경검사 실시) 후 운행토록 조치.

-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로 연락

7. 발생농장에서 반출된 분변을 처리한 업체

- 가. 발생일 기준으로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분변이 있는 경우 분뇨처리업체내 분변 등(생산된 퇴비 등 조류인플루엔자 전과 위험이 있는 모든 것 포함)은 이동제한하고 생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발효 처리하여 반입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 나. 다만, 21일 이전에 공급받은 분변으로부터 생산된 퇴비가 완제품으로 포장되어 다른 분변과 차단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반출 가능(21일 이전에 공급받았으나 완제품으로 포장된 경우가 아닌 분변은 이동제한 하되 21일 이내 공급받은 분변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때 같이 이동제한 해제)

8.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의 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및 차량이 출입한 시설(사료공장·사료하치장·동물병원·왕겨업체·가

금판매소·식용란선별포장업 등)에 대하여 세척·소독 및 건조 조치하고, 해당 시설 및 차량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운영(운행)토록 조치

- ※ 역학관련 농장에서 이동제한 중인 가금(초생추 포함) 및 알(종란, 식용란)에 대하여는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을 시 도축·출하·반출 허용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동제한 기간 중 도축·출하·반출 금지
 -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발생농장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부화하는 가금·알
 - 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금·알이 사육·부화되는 농장·부화장의 가금·알
 - 가축방역관이 도축·출하·반출시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금·알

- ※ 방역조치 대상을 선정하거나 방역조치의 기간을 산정할 경우, 기준일(발생일, 방문일 또는 공급일 등)은 기간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 예시 : 방문일이 2월 10일이고 방문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동제한 기간은 2월 17일까지임

[별표 6]

도심지 방역실시요령(제24조제7항 관련)

1. 공통사항

- 1.1 「AI 방역실시요령」을 준용하되, 주변여건 등 도심지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2. 방역지역 설정

- 2.1 방역지역은 발생농장(시설)에서의 여타 농장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 후 검역본부 등 방역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필요시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이동통제·소독 등을 실시한다.
- 2.2 발생농장(시설) 주변에 가금류 사육농가(시설)가 없고, 출입하는 차량, 사람, 가금류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역지역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감수성 동물 및 관련 오염물건 등 살처분·폐기

- 3.1 도심지의 교통·지리·유동인구·가금사육현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살처분·폐기 범위 등을 설정한다.
- 3.2 발생원인, 유입경로, 주변지역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관리지역 안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여부를 정한다.
- 3.3 방역지역 안의 애완조류(희귀조류) 판매장, 대학·민간연구소, 대공원·동물원 등 비전문 사육시설에서 사육중인 조류는 가축방역관의 자문을 받아 주변으로의 전파 위험성 등 방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살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 3.4 1,000수 이하의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매몰 할 경우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스 배출관,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매일 매몰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한다.
- 3.5 일반 가정집, 조류자연학습장, 동물원 등 소규모 비전문 조류 사육농장(시설)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혐오감 등 미관과 주민불편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매몰지

표지판 설치여부를 정한다.

4.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및 방역조치

4.1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해제는 방역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살처분·폐기하고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발생지 안의 분변(분변이 없는 경우 바닥의 흙 또는 사육장 우리 등 swab)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날로부터 한다.

4.2 방역지역에서의 감수성 동물의 재사육은 [별표7] 입식시험요령에 따른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5. 대공원, 동물원, 조류자연학습장 등 조류사육시설 방역조치

5.1 사람, 차량, 감수성 동물 등의 이동에 따른 AI 전파위험이 있는 인근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발생지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 까지 외부 개방 중단. 다만, 대공원, 동물원 등 자체적으로 방역담당 수의사가 있을 경우 해당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개방 중단 여부 결정
- 사육 조류에 대한 일일 AI 임상검사 등 예찰 실시
- 사람, 차량, 감수성 동물 등의 이동 제한 및 출입시 소독 실시
-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실시
- 사육 오리류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별표 7]

입식시험실시요령(제33조 관련)

1. 입식시험의 준비

- 가.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시험가축선정·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방역관련 교육(4시간)을 입식 승인 전에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나.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농장내 관리시설과 축사 내외·진입로·축산기자재 등의 분변·왕겨·사료 등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청소)한 후에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소·세척 및 소독상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과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라.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한 입식시험 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입식시험 승인을 요청(별지 제4호서식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야 한다.
- 마. 검역본부장은 해당 농장에 대한 입식시험전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해 가목에 따른 입식 승인 전 방역관련 교육(4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바. 검역본부장은 입식시험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시장·군수에 입식시험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시험가축의 선정

- 가.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은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지역(방역지역 외)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닭이어야 한다.
- 나. 시험가축은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시험가축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음성 및 H5·H7 항체 음성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다. 시험가축의 종류 및 마리수는 다음과 같다.

- 1) 가장 감수성이 높은 축종인 닭을 시험가축으로 사용

2) 모든 축사당 4~12주 산란계 중추(웅추 포함 가능) 또는 4~5주 육계 최소 5수 이상(단, 축사규모별 시험수수 증가)

※ 축사 규모별 시험축 ① 2만 수 이하(5수 이상), ② 2만 수~5만 수(10수 이상), ③ 5만 수~10만 수(20수 이상), ④ 10만 수 이상(30수 이상)

3) 재입식 시험가축 배치시 반드시 발생한 지점을 포함하여 축사내 골고루 배치(1 지점 당 5수)

3. 입식시험의 방법

가. 발생농장의 입식시험은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및 발생농장에 대한 환경검사(분변이 있을 경우 분변 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실시한다.

나.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구입일자·운송방법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어 급여하는 등 시험가축이 발생농장 안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시험축 배치시 반드시 발생한 지점을 포함하여 축사 내에 골고루 배치(1 지점 당 5수)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산란계·종계 등 케이지 내에서 사육하는 축사의 경우 시험가축을 이동식 케이지에 넣은 채로 축사내를 이동시키면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자주 접촉되도록 하거나 케이지 내에서도 사육시키는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입식시험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할 것.

라. 입식시험기간은 최대 잠복기를 감안, 2주간으로 한다.

마. 가축방역관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까지 매 2일마다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상검사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2주 경과 후 혈청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KAH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정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아.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동제한 조치하고 이상증상을 보이는 개체(필요 시 전수)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항체)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KAH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 시장·군수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입식시

험관련 제반서류(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식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식시험 중 H9형 등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H7형 이외) 항체가 검출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후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 1) 입식시험 농장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후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 2) 시험가축을 공급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도축장 등으로 사육 중인 가금을 출하하여 농장 내 가금이 없을 경우 환경검사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차. 검역본부장은 시장·군수가 제출한 입식시험 관련 제반서류의 적정 여부, 방역 교육 이수 여부(중복발생 농장에 한함)를 확인한 후 입식 승인 여부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입식시험 재 실시

가. 입식시험 기간 중 인근지역의 AI 추가 발생으로 입식시험 농가가 방역지역의 관리지역(500m) 내에 위치할 경우 시·군에서는 입식시험 농가의 시험축을 즉시 살처분하고 방역지역 해제 이후 입식시험을 재차 실시하며, 보호지역(500m-3km)이나 예찰지역(3-10km) 내에 위치할 경우 입식시험을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지역이나 예찰지역 내의 입식시험 진행은 AI 추가 발생 이전에 이미 입식시험이 진행 중인 농가에 한하여 적용되며, 입식시험이 방역지역 해제 이전에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이후 방역조치는 방역지역내 다른 농장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별표 8]

검사시료 채취 및 송부요령(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1.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위한 농장의 검사시료 채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병리해부검사의 경우 5~10수 정도의 폐사축
 - 나. 혈청검사의 경우 축사별로 혈액 20수(개체당 2ml 이상)
 - 다. 항원검사의 경우 채혈한 동일 개체의 인후두 및 총배설강 swab을 20개씩 채취하며, 분변은 축사 내 일부분에 편향되지 않도록 20점씩 채취한다.
2. 검사시료 채취대상은 가능한 개방 사육사에서 사양되는 것을 우선 선발하고 주령에 편중됨이 없도록 한다.
3. 시료 송부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료채취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시료가 운송 중 누출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 농장명, 축주명, 농장주소, 연락처, 가금종류, 시료채취 연월일, 시료채취시 주령, 사양형태(무창, 개방, 평사, 케이지)
 - ※ 가금종류 : 닭(종계·산란계·육계·토종닭·삼계), 오리(종오리·육용오리), 기타 가금류(메추리 등)
4. 송부처 : 농림축산검역본부(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별표 9]

조류인플루엔자 지역별 위험도(제2조제4호 관련)

1. 위험도는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축산업 형태,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가. 지형적 여건 : 지형을 구분시키는 산, 강 등의 자연적 요소와 고속도로 등 인위적 요소에 따른 분리 가능성 분석

나. 역학적 특성 : 기존 발생농장과 관계 및 농장들 간, 계열사와의 관계, 사료회사 및 분뇨처리 업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역학적 관계 분석

* 발생한 질병 원인체의 특성에 대한 분석 포함

다. 축산업 형태 : 가금산업의 밀집도(단위 면적당 농가수, 단위면적당 사육 가금수, 단위면적당 축산종사자 수)에 대하여 방역대내 지역과 방역대 외 지역을 비교하여 해당지역의 상대적 밀집도 분석

라.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 인근의 철새도래지(강, 호수, 저수지 등)의 존재 여부와 철새 및 야생동물의 출현 빈도에 따른 위험도 분석

마. 계절적 요인 : 주변지역과의 평균 기온, 강수, 강설량에 따른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바. 기타 고려사항 : 해당 농장 또는 지역적(마을단위 등) 특성 반영

[별표 10]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살처분 범위 결정 절차(제19조제1항 관련)

1.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서의 살처분 및 폐기 범위는 관리지역 내 전체 적용대상 동물 및 보호지역 내 발생농장과 동일한 축종의 적용대상 동물을 원칙으로 하되, 제2호의 절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호에 따른 살처분 및 폐기 범위 결정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살처분 및 폐기 범위를 정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해외 야생조류 및 가금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 나. 해외 발생 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병원성, 임상증상 등 특성
 - 다. 국내 유입되는 철새의 이동경로
 - 라. 철새의 행동반경
 - 마. 국내 가금농장 등 방역관리 상황 및 과거 국내 발생사례에 대한 역학분석 결과
 - 바. 기타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호에 따라 살처분 및 폐기 범위가 정해진 이후부터 2주간격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살처분 및 폐기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2주간격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철새 도래 및 분포 현황
 - 나. 야생조류 H5/H7 항원·항체 검출 현황
 - 다. 가금농장 AI 항원·항체 검출 현황
 - 라. 방역대/역학농장(시설) 검사현황
 - 마. 기타 살처분 범위 조정 검토에 필요한 사항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보고한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살처분 및 폐기 범위를 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측발생신고서

		접수시간 : 오전	
1. 신고접수일 : _____		오후 _____	
2. 신고자 주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성명 : _____		(직업) _____	
3. 발생농가의 주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성명 _____		(휴대전화) : _____	
4. 신고사항			
축종 : 닭(종계·산란계·육계·토종닭·삼계), 오리(종오리·육용오리), 기타			
사육수수 :		주령 :	
발생수수 :		폐사수수(최근 5일간) :	
산란율 감소여부 :			
5. 증상 및 병력개요			
6. 기 취한 응급조치			
7. 신고자에 대한 지시사항			
8. 신고수리자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9. 조치사항			

[별지 제2호서식]

현 지 조 사 표

1. 출장자 성명	시간	월일
2. 축주 주소 성명 축사 소재지(축주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		
3. 현지 조사일 :	시간	
4. 축종별 사육수수 : 닭 오리 기타		
5. 의사환축(축종, 사육형태, 주령, 발생수수, 일자별 폐사수수)		
6. 병력, 증상, 병변의 개요(산란율 감소여부 등)		
7. 진단 소견		
8. 병성감정 시료 채취 : 폐사체(수), 의사환축(수), 혈액(수), 기타 ()		
9. 조치사항 출입구의 폐쇄, 가축의 계류, 소독조의 설치		
10. 과거 21일간의 가축의 이동상황 : 판매(분양, 출하) 구입(입식, 입란)		
11. 과거 21일간에 접촉한자 : 출입한적이 있는 수의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 당해관리자, 다른 축사에의 방문 여부		
12. 축주의 관리하는 다른 축사(수수)		
13. 인근 축산농가의 유무(반경 500m내)		
14. 집란 : 부화장의 소재지		
15. 살처분 예정수수 : 닭 _____ 오리 _____ 기타 _____ 사체처분방법, 소각, 매몰, 기타()		
16. 관계인의 해외여행 유무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 인근 야생조류 출몰현황?		
17. 기타 역학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항		

[별지 제3호서식]

시 료 채 취 내 역 서

☐ 시료채취일 : _____

☐ 시료채취자 : (소속) _____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 농장명(시료채취지명) : _____

☐ 소재지 : _____ 연락처 : _____

☐ 축주명 : _____ 관리자 : _____

☐ 사육현황

☐ 사육규모 : _____ 사육동수 : _____

☐ 축종 및 품종 : _____ 사육형태(무창, 개방, 평사, 케이지 등) : _____

☐ 구입처 : _____

☐ 최근 입식일자 및 관련 부화장(농장), 입식수수 _____

☐ 가금류 또는 종란 판매처 : _____

☐ 최근 출하일자 및 도축장 (또는 부화장), 출하수수(공급수수) _____

☐ 사육사별(동별) 시료채취 내역

[illegible]

* 기타 임상증상 : 폐사 이외의 모든 임상증상을 기록

※※ 폐사체 : 폐사체는 폐사가 있는 동에 한하여 동별 5수 이하

상기 시료에 대한 AI 검사(항체 및 항원)를 의뢰합니다.

의뢰 기관 :

의뢰 일자 : 년 월 일

※ 검사의뢰서는 의뢰대상 동물·시료 특성 등을 감안 필요시 변경 가능하나, 폐사 여부·기타 임상증상·폐사체 사항을 반드시 기록

※ 검사의뢰시 의뢰자는 반드시 상기 시료채취내역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의뢰

[별지 제3의1호서식]

시 료 채 취 내 역 서(야생조류)

☐ 시료채취일 :

☐ 시료채취자 : (소속) (성명) (연락처)

☐ 시료채취장소

○ 주 소 :

☐ 시료채취 내역

연번	시료채취 장소			시료채취 내역				비고
	주 소	위경도 좌표		폐사체	분변	깃털	기타 (물)	
1								
2								
3								

상기 시료에 대한 AI 검사(항체 및 항원)를 의뢰합니다.

의뢰 기관 :

의뢰 일자 : 20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전 청소·소독 등 점검표

☐ 농장현황

축산업등록(허가)번호		농 가 명		축 주 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동제한해제일	
사육축종		사육동수		사육두수	

☐ 입식 전 점검사항

가. 청소·소독

점검내역	점 검 결 과(점검결과 상태가 양호하면 □에 ✓)
주택·관리사·창고	신발소독조□, 내부□, 외부□, 거주시 사용물품□, 화장실□
축사	외부□, 신발소독조□, 바닥□, 울타리□, 벽□, 원치커튼□, 기둥□, 천장□, 기구보관 등 창고□, 냉장고□, 분뇨처리□, 축사 내부 소독□, 배수로 정비□
운동장	바닥□, 울타리□, 분뇨처리□
방역실	신발소독조□, 내부□, 외부□
전실	신발소독조□, 장화비치□, 손소독제□, 축사전용작업복□,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차단시설
작업도구	트랙터□, 차량□, 손수레□, 삽□, 청소도구□, 기타 농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도구□

나. 소각·매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급여종이던 사료□, 보관사료□, 보관왕겨□
음식물찌꺼기□, 의복□, 신발□, 장화□, 소각가능한 물품□
빗자루 등 소각 가능한 작업도구(빗자루□, 기타□)

다. 강화된 방역시설 상태 및 요건

농장 출입구 및 농장 내 소독시설(대인, 차량) 유무□, CCTV 설치 및 작동 상태□
농장 주변 울타리 및 출입 통제문 유무□, 구서 여부(구서제, 쥐덫 등)□, 구충 여부□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설치 유무(축사·벽면·환풍구·배수로·집란용 컨베이어벨트·분변 제거 개구부·분뇨처리장)□
매몰지 부지 확보 여부□, 왕겨 보관 및 차단상태□ ※ 관할 시·군은 농장 내·외 농경지, 사유지 등 매몰부지 확인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보완 여부□
행정명령 및 강화된 방역기준, 방역수칙 등 숙지 여부□

※ 점검과정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될 경우, 미흡사항을 보완 조치한 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입식시험 실시

[별지 제5호서식]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 시험축 등 점검표

축주 : 농장명 : 주소 : 연락처 :

구분	점검내역	점검결과(점검결과 상태가 양호하면 □에 ✓ 표시)
시험축 입식전 사 전 점 검	구입처	구입처(), 구입일자(), 운송방법()
	구입축	축종(닭 수), 품종(), 나이(주령), 성별(♂ 수, ♀ 수)
	임상관찰	사료섭취감소□, 침울□, 설사□, 기침등 호흡기 증상□, 안면부종□, 벼슬·육수의 청색증□, 기타 특이사항□
	혈청검사	시험축 사육농장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음성 확인여부□
	예방접종	뉴캐슬병□, 전염성F낭병□, □, □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방역지역)에서 생산된 가축은 시험가축으로 입식 불가	
사 양 관 리	시험관리	- 시험가축 외부유출방지를 위한 방책설치□ - 계사형태·상황을 고려하여 계사내에서 이동사육□ :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오염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분에 접촉 가능하도록 사육 (케이지 사육형태인 경우 이동식 케이지 이용가능)
	사료급여	- 사료회사 : 왕겨구입처 : - 사료운송 방법 : 왕겨 운송방법 : - 사료급여 방법 :
점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점검일시		

- ※ 축주 주의사항
1. 외부인, 타 축산인 등 농가 출입금지
 2. 축주의 친인척, 관혼상제 및 타농가 방문자제 협조
 3. 농장 출입구 소독조 설치 및 농장주위 소독철저 등

[별지 제6호서식]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 임상검사표(축사별)

○ 축주 : (농장명 :)
주소 : (연락처 :)

시험일자		주요 임상증상							점검자 (소속 성명)
		식욕감소	침 울	설 사	기침 등 호흡기증상	안면 부종	벼슬·육수의 청색증	폐 사	
1주 ~ 2주	입식일 (월 일)								
	2일 (월 일)								
	4일 (월 일)								
	6일 (월 일)								
	8일 (월 일)								
	10일 (월 일)								
	12일 (월 일)								
	14일 (월 일)								
☐ 기타 특이증상 및 병변									
☐ 종합소견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제 호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출발지 농장 현황	농장명		주소		사육두수	개동 수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임상 검사	☐ 사료섭취감소 ☐ 침울 ☐ 설사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 안면부종 ☐ 비슬·육수의 청색증 ☐ 최근 15일 이내 폐사 수수 (수) ☐ 산란율(%)								
임상관찰결과		시료채취일(시간)			정밀검사결과				
이동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도착지	업체(농장)명 또는 전통시장		주소				연락처		
출하 및 운송	출 하 수수(개수)					운송차량 변 호			
	축 종	품종	일령 (주령)	운송인 성명 (구매자)		전화 번호			
	운 반 차 량	☐ 출하 및 하차시 : 차량 내·외부 철저한 세척 및 소독실시 ☐ 차량적재함 바닥 :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오염방지 ☐ 운반차량 준비물 : 소독약품, 휴대용 소독장비 동일 농장에서 동일 도착지로 이동 시 다수의 운송차량이 필요한 경우, 출하 및 운송 세부내역을 뒤쪽에 별도 기재할 수 있음							
상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임상 관찰, 정밀검사 결과 특이 증상이 없고, 운반차량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청소·소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가축방역관 소속 및 성명)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간 인 _____ 절 취 선 _____ 간 인 _____

제 호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출발지 농장 현황	농장명		주소		사육두수	개동 수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임상 검사	☐ 사료섭취감소 ☐ 침울 ☐ 설사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 안면부종 ☐ 비슬·육수의 청색증 ☐ 최근 15일 이내 폐사 수수 (수) ☐ 산란율(%)								
임상관찰결과		시료채취일(시간)			정밀검사결과				
이동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도착지	업체(농장)명 또는 전통시장		주소				연락처		
출하 및 운송	출 하 수수(개수)					운송차량 변 호			
	축 종	품종	일령 (주령)	운송인 성명 (구매자)		전화 번호			
	운 반 차 량	☐ 출하 및 하차시 : 차량 내·외부 철저한 세척 및 소독실시 ☐ 차량적재함 바닥 :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오염방지 ☐ 운반차량 준비물 : 소독약품, 휴대용 소독장비 동일 농장에서 동일 도착지로 이동 시 다수의 운송차량이 필요한 경우, 출하 및 운송 세부내역을 뒤쪽에 별도 기재할 수 있음							
상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임상 관찰, 정밀검사 결과 특이 증상이 없고, 운반차량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청소·소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가축방역관 소속 및 성명)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추가 내역

○ 출하 및 운송 세부내역

구분	출하 수수	운송차량 번호	운송인 성명	축종	품종	일령 (주령)	전화 번호	확인사항			비고
								출하·하차시 세척·소독	차량 적재함 바닥에 오물 등 오염방지	차량 준비물: 소독약품, 휴대소독 장비	
								☐	☐	☐	
								☐	☐	☐	
								☐	☐	☐	
								☐	☐	☐	
								☐	☐	☐	

상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임상 관찰, 정밀검사 결과 특이 증상이 없고, 운반차량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청소·소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가축방역관 소속 및 성명)

(인 또는 서명)

간 인 절 취 선 간 인

○ 출하 및 운송 세부내역

구분	출하 수수	운송차량 번호	운송인 성명	축종	품종	일령 (주령)	전화 번호	확인사항			비고
								출하·하차시 세척·소독	차량 적재함 바닥에 오물 등 오염방지	차량 준비물: 소독약품, 휴대소독 장비	
								☐	☐	☐	
								☐	☐	☐	
								☐	☐	☐	
								☐	☐	☐	
								☐	☐	☐	

상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임상관찰, 정밀검사 결과 특이 증상이 없고, 운반차량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청소·소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가축방역관 소속 및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8호서식]

가축거래기록대장(가금공급농가 및 판매소)

대표자			주소			거주지						
전화번호						계류장·농장						
거래 일자	거래 가축	수량	구입 또는 판매	구입·판매처			운송인					비고
				대표자	주소	연락처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차량 소독일*	차량GPS 장착	

* 거점소독장소에 발행한 소독 필증을 참고로 작성

[별지 제8호의2서식]

가축거래기록대장(가금 거래상인)

차량번호					주소	거주지						
성명·전화번호						계류장						
거래 일자	거래 가축	수량	구입 또는 판매	구입·판매처					차량청소 및 소독*			비고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기타	소독장소	소독일	기타	

* 거점소독장소에 발행한 소독 필증을 참고로 작성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의7서식]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제출 시, 거래 기록은 인정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의3서식]

식용란거래기록대장(식용란수집판매업자)

차량번호				주소	거주지							
성명·전화번호					판매업소							
거래 일자	식용란 종류	수량	구입 또는 판매	구입·판매처					차량청소 및 소독*			비고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기타	소독장소	소독일	기타	

* 거점소독장소에 발행한 소독 필증을 참고로 작성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제출 시, 거래 기록은 인정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일련번호 :						
소독필증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				
소독내역	소독일시		이동경로		→	
	이동목적					
소독 실시자	소독지역	☐ 발생지, ☐ 보호지역, ☐ 예찰지역,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 ○ ○ 시·군, ☐ ○○○ 시·도				
	소독장소명					
	소속		직급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절취선-----

일련번호 :						
소독필증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				
소독내역	소독일시		이동경로		→	
	이동목적					
소독 실시자	소독지역	☐ 발생지, ☐ 보호지역, ☐ 예찰지역,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 ○ ○ 시·군, ☐ ○○○ 시·도				
	소독장소명					
	소속		직급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절취선-----

일련번호 :						
소독필증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	(연락처 :)				
소독내역	소독일시		이동경로		→	
	이동목적					
소독 실시자	소독지역	☐ 발생지, ☐ 보호지역, ☐ 예찰지역,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 ○ ○ 시·군, ☐ ○○○ 시·도				
	소독장소명					
	소속		직급		성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폐사율 및 산란율 기록 대장

○ 축주 : (농장명 :)
주소 : (연락처 :)

[illegible]

* 산란수와 산란율은 산란용 가금을 사육하는 농가에 한하여 작성

*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기록으로 축사별 폐사율 및 산란율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록을 인정할 수 있다.

확인자 농장주 (서명)